

- 2024년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 사업계획서 접수 안내

지역별 특화 사업을 이끌어갈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기업 육성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시군청년 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사업계획서 접수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고창군수

군산시장

김제시장

남원시장

무주군수

부안군수

순창군수

익산시장

임실군수

장수군수

전주시장

정읍시장

진안군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2024년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 사업목적

- 기초지자체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 특화 사업 활성화
-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특화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창업의 지속가능성 연계
- 지역 특화 사업 발굴을 통한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인구소멸지역 대응

□ 지원내용

- 교육: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필수 참여)
- 사업화 지원: 사업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급(팀별13백만원), 컨설팅

□ 추진일정

신청서접수	>	창업기업 육성프로그램 운영(1차)	>	창업기업 육성프로그램 운영(2차)	>	창업기업 육성프로그램 운영(3차)	>	역량평가
2.13.~3.5.		3.20.~4.4. (총 3회)		4.15.~4.22. (총 3회)		4.23.~4.29. (총 1회)		서면: 4.30~5.2. 대면: 5.9.~5.10.
선정 및 협약	>	창업기업 육성프로그램 운영(4차)	>	시제품 제작 지원	>	중간점검 및 전담 컨설팅 운영	>	최종점검 및 성과교류회 개최
5월중		5월중		6월~11월		8월~10월		12월중

※상기일정은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운영개요

□ 운영일정

사업계획서 제출	>	역량평가(서면평가)	>	역량평가(대면평가)
4.22.(월)~29.(월) 15시까지		4.30.(화)~5.2.(목)		5.9.(목)~10.(금)

□ 사업계획서 접수

- 제출기간: 2024. 4. 22.(월) ~ 29.(월), 15시까지 **※기간 내 제출 엄수**

□ 제출방법

- 접수처: 온라인 신청 플랫폼(<http://event.jbci.or.kr/>) 접수
- 제출양식: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 다운로드
- 문의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63-220-8944, 8946

□ 제출대상

-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3.14.기준)
-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총 7회) 참여율 70% 내외 수료자
 - 지역별 특화분야 아이디어와 기술 기반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참여자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 기업 ^{*2024.1.1기준}
 - ※신청 시군 외 거주 또는 사업자 등록의 경우, 협약일 전에 해당 시군 내로 거주지 이전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필수(사업자 등록일, 주민등록등본 기준)
 - 만 39세 이하 청년혁신가(1984. 1. 2. ~ 2005. 1. 1.)
 -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 창업자(2021. 1. 1. 이후 창업기업)
 - ※[참고1] 창업기업 확인기준 확인
 - 시·군별 지역 특화분야 창업 아이디어 우선 선발
 - ※[참고2] 지역별 특화분야 확인
 - 2023년 사업 참여팀 재참여 가능하나 전년도 사업 아이디어의 고도화 목적에 한함(전체 규모 10% 내외 선발)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참가신청서 1부	필수	-
2	■ 사업계획서 1부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구분	증빙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 시	교육생 선정(3.14.) 이후 소재지(주소) 이전한 예비창업자
2	■ 사업자등록증 1부		교육생 선정(3.14.) 이후 신규 창업한 창업자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 선정자의 서류는 자체 파기

□ 사업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 신청지역과 창업아이템 등 지원 내용은 이전 신청과 동일하게 작성
 - ※신청지역은 신규 창업 및 소재지(주소) 이전일 경우 변경가능(증빙서류 첨부 필수)
 - ※창업아이템은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종목에 해당될 경우 변경 가능

□ **역량평가(서면평가)**

- 평가대상: 아래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한 창업기업(팀)
 - ①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수료자(참여율 70% 내외)
 - ② 사업계획서 제출자
- 선정규모: 대면평가 대상자 50팀 선정
- 평가일정: 2024. 4. 30.(화) ~ 2024. 5. 2.(목)
- 결과안내: 2024. 5. 3.(금)

□ **역량평가(대면평가)**

- 평가대상: 서면평가 결과 선정된 50팀
- 선정규모: 총 33팀

지자체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익산	임실	장수	전주	정읍	진안	계
규모(팀)	4	3	4	3	2	3	1	2	2	2	2	2	3	33

- 평가일정: 2024. 5. 9.(목) ~ 2024. 5. 10.(금) 10:00 ~ 18:00 (예정)
- 평가장소: 전북테크비즈센터 5층(대회의실, 중회의실)
- 역량평가기준

평가항목 (100)	세부 평가항목
기업가마인드 (30)	. 기업가 마인드 및 사업추진 의지
	. 창업 및 지원동기의 명확성, 윤리적 소양 및 신뢰성
아이템차별성 (30)	. 지역 특화분야 창업 아이디어 및 기술 혁신성
	.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화 가능성
구체화가능성 (40)	. 사업계획 및 아이템 실현 가능성
	. 시장성 및 시제품 도출 기대효과

- 결과안내: 2024. 5. 13.(월)
 - ※역량평가 시 의사결정이 가능한 대표자의 발표가 원칙
 - ※대면평가 대상자에게 운영방법 및 세부내용 별도 안내 예정

Ⅲ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사업화 자금: 지역 특화 기반의 아이디어 및 기술 기반 사업 실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팀별 13백만원) 지원
- 지원규모: 총 33개팀 내외(팀별 13백만원)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예산비목

구분	비목	비목 정의
1	시제품제작비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용역비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비 -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비용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2	홍보비	창업기업 및 시제품 홍보를 위한 디자인비(BI-CI), 홍보물(리플릿, 영상) 제작비 ※ 해당 비목 활용 금액은 3백만원에 한함
3	장비임차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임차하는 비용
4	지식재산권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5	회계감사비 (고정비목)	회계법인 감사에 따른 비용 ※ 기업별 10만원

□ 컨설팅

- 중간점검 및 전담 컨설팅
 - 사업 추진 현황 중간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후 해결방안 제시
 - 사업비 활용 유의사항 및 서류 작성 안내 등 행정 지원
 - 희망 분야 전문가와 1:1 매칭 되어 사업화 지원에 관한 자문 및 전문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결
- *컨설팅 분야 : 창업, 마케팅, 투자, 기술, 유통, 생산 등

□ 사후 연계 지원

- 분기별 센터 자체 성과조사를 통한 참여팀 현황 점검
- 기술 사업화 교육 연계 운영
 - 기술고도화 및 실무기반 기초·심화 창업교육
 -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공유,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LIPS 추천 기업으로 육성 및 글로컬(Glocal) 성장 기회 제공
- *LIPS: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 및 추천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IV 기타사항

□ 선정 제외대상

-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는 자는 신청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 특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가능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정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 최종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참고1] 창업기업 확인 기준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창업아님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아님
			폐업 3년 까지	창업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참고2] 지역별 특화 분야

지자체	특화분야
전주시	바이오·헬스, 관광, 콘텐츠(문화, 영화)
군산시	관광, 농·생명
익산시	바이오·헬스, 식품, ICT
정읍시	관광, 농·생명(식품 등), ICT
남원시	모든 산업분야
김제시	관광, 농·생명(식품)
진안군	관광, 농·생명(식품)
무주군	관광, 농·생명(식품)
장수군	관광, 농·생명(식품)
임실군	농·생명(반려동물, 식품)
순창군	관광, 농·생명
고창군	관광, 농·생명(식품)
부안군	관광, 농·생명(식품)